

기지마고원 파크 이용 규약

I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본 놀이공원에 대한 출입거부 또는 시설 외부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입장 거부)

제1조. 본 놀이공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놀이공원에 대한 출입을 거부합니다.

1. 본 놀이공원을 이용하려는 자 중에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련 기업·단체 또는 그 관계자, 기타 반사회 세력
(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"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"이라 한다.)에 속하는 자
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, 기타 단체에 속하는 자
그 임원 중에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법인에 속하는 자
만취 또는 만취 상태에 현저히 가까운 자
2. 본 놀이공원의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히 민폐를 끼칠 언행을 할 우려가 있으며, 본 놀이공원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본 놀이공원 또는 본 놀이공원의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경우
4. 본 이용 규약에 정해진 금지 사항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
5. 위 항목에 추가하여,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된 경우

(이용 중지, 퇴장 조치 및 신고 조치)

제2조. 본 놀이공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시설 이용을 거부하며, 시설 외부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약 본 놀이공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,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.

1. 본 놀이공원의 이용객 중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
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에 속하는 자
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, 기타 단체에 속하는 자
그 임원 중에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법인에 속하는 자
만취 또는 만취 상태에 현저히 가까운 자
2. 본 놀이공원의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히 민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
3. 본 놀이공원 또는 본 놀이공원의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
4. 본 규약이 정한 금지 사항을 행한 경우

II 본 놀이공원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.

- 맹도건, 청도건 또는 보조건을 제외한 애완동물 동반 입장
- 스케이트보드, 킥보드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으로의 주행
- 텐트, 가든 파라솔 등의 반입 및 사용
- 휴대용 가스버너, 폭죽 등 화기류의 반입 및 사용
- 구기 행위 전반
- 드론 등 무인 비행기의 반입 및 사용
- 보행중 흡연,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
-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승차 입장
- 무허가 영업 행위, 진단지 배포, 광고 홍보 활동, 집회 또는 연설
- 무허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녹음, 녹화 또는 촬영
- 입장권 등 티켓의 매매·전매 등의 암표 행위
- 폭발물, 총기 및 도검류 등의 위험물 반입
- 본 놀이공원 내의 안전·풍기·질서를 어지럽히고, 타인에게 민폐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본 놀이공원의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

이상

2025년4월1일 개정